

- 2026년 제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-

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26년 제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4월 20일

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담당직무 ※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(중복 지원 불가)

임용 분야	임용 예정 직 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처 및 근무시간	담당직무
전문 위원	지방행정주사 (일반임기제6급)	1명	2년	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(주 40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의원발의 의안의 입법 지원 ○조례안, 예산안, 청원 등 소관 안전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○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○각종 의안을 비롯한 관련 자료의 수집. ○조사·연구 및 의원에 대한 자료 제공 ○의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 ○그 밖에 전문성을 요하는 의회관련 업무전반
정책 지원관	지방행정주사보 (일반임기제7급)	1명	2년	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(주 40시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·조사·분석 지원 ○의원의 서류(자료)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○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·분석 지원 ○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·분석 등 지원 ○의원의 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분석 및 연구 등 지원 ○의원의 공청회·세미나·토론회 등 개최, 자료 작성, 참석 등 지원 ○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·조사·분석 및 연구 등 지원 ○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·수집·분석 및 지원 ○그 밖에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

※ 근무실적 평가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 및 제27조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,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

3.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○ 공통 응시자격요건

- 응시연령: 18세 이상 (2008. 12. 31. 이전 출생자)
- 지역·성별: 제한없음 (다만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).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않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 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□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(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)

-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**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** (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7조제5항)

구분	직무 분야 응시자격 요건
전문위원 (일반임기제 행정6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2.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정책지원관 (일반임기제 행정7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*이 있는 사람 2.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【관련분야 실무경력】

국회, 지방의회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*, 출자·출연기관**, 대학교(부설 연구기관 포함)에서 법무(법제검토, 법률자문, 입법실무 등), 재정분석, 정책개발·분석,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획·연구, 감사·조사 관련 근무경력

*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(alio.go.kr)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(cleaneye.go.kr) 기준

** 2026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(행정안전부)

- ❖ 채용분야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(중복 지원 불가)
- ❖ 책임소재가 명확한 담당자급 이상 경력 인정, 사무보조·단순지원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.
- ❖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: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, 담당업무,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.
- ❖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.
- ❖ 전임 근무(1일 8시간)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(예시: 주20시간 근무) 되어야 하며, 근무시간(주40시간 기준)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.

□ **임용분야별 우대조건**(기준일: 원서접수 마감일)

구분	우 대 요 건
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	○ 법학, 정치학(정치외교학), 행정학, 사회학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
<p>※ 참고(유의)사항</p> <p>1) 우대요건은 서류심사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</p> <p>2) 학위별, 전공별 차등 우대하지 않으며, 동일 응시자에 학위 1개만 인정</p> <p>3) 석사수료와 박사수료는 학위 불인정</p>	

4. 보수수준

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**연봉한계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**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-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별표13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6급(상당)	86,606천원	57,708천원	① 연봉 외 급여(각종수당)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②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7급(상당)	70,782천원	50,272천원	

5. 시험방법

- **1차 시험(서류전형)**
 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 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 -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

□ 2차 시험(면접시험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면접시험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5개 항목 100점 만점(항목별 20점)(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」)
- 5개 항목 평정요소를 각각 상·중·하로 평가 후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불합격기준: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“하”로 평정한 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.

6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원서교부: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 등)을 출력하여 사용
- 접수기간: **2026. 5. 6.(수) ~ 5. 8.(금)** [3일간]
- 접수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
 - 인터넷 접수 불가,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.
 - 응시수수료: **7,000원**
 - ※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 - ※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료 면제(해당자는 증명서 제출)
 - ※ 대리접수(가능)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< 방문 접수 >

- 접수장소: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(인사교육팀 053-667-5885, 본관 2층)
- 접수시간: 09:00~18:00 / 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▶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능
- 응시수수료: 달서구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

< 등기우편 접수 >

- 주 소: (우)42731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(월성동), 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인사교육팀(인사담당자)
- 원서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
- 임용분야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
 - ▶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 불가
- 우편봉투 외부에 '달서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(전문위원/정책지원관)' 문구 표기
-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(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)
- 우편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화 요망(인사교육팀053-667-5885)

7. 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(별지 제1호 서식) 1부
- 응시원서(별지 제2호 서식) 1부
- 이력서(별지 제3호 서식) 1부
 -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 필요(증빙자료가 없는 경력·학력은 인정하지 않음.)
- 자기소개서(별지 제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(별지 제7호 서식) 1부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 제8호 서식) 1부 또는 주민등록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) 1부
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초본을 제출하지 않음.
-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별지 제9호 서식) 1부
-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
 -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,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(또는 학위증서) 모두 제출
- 업무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(해당자에 한함.)
 -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지참하고,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 시 원본 지참
- 임용예정 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(사본 가능)
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- 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'경력사실 확인 증명서'(별지 제10호 서식) 추가 제출
-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하기 바라며,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.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(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.)
-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(www.ei.go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
- ※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**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함.**

8. 시험일정 및 최종합격자에정자 발표

구 분	기 간	
공개모집 공고	2026. 4. 20.(월) ~ 5. 5.(화)	
원서접수	2026. 5. 6.(수) ~ 5. 8.(금)	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	2026. 5. 18.(월) (예정)	
면접시험	2026. 5. 26.(화) ~ 5. 28.(목) 중 (예정)	
최종합격예정자 발표	면접시험 종료일 익일 예정	
임용예정시기	전문위원	2026. 7. 8.(수) (예정)
	정책지원관	2026. 7. 13.(월) (예정)

- ❖ 공개모집을 통한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에 따라 임용
- ❖ **서류전형 합격자** 및 **면접시험 시행계획**, **최종합격자 발표**는 [달서구의회 홈페이지](http://www.dalseocouncil.daegu.kr)에서 확인
 ➔ (달서구의회) <https://www.dalseocouncil.daegu.kr> 접속 → 참여마당 → 채용공고
- ❖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
- ❖ 최종합격예정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에 한하여 임용자격이 부여됨.

9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 - 채용서류의 반환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처리합니다.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 -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,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, 졸업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)
 -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 -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,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와 함께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및 제57조(정치운동의 금지)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,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등 정치운동은 금지됩니다.
 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거나,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합니다.
 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☎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회사무국 인사교육팀(☎ 053-667-5333, 5885)